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손동운^{**} · 조성구^{***} · 김동제^{****}

〈요 약〉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민간조사, 경찰청, 법무부, 경비업법

* 이 연구는 2014년 (사)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박사수료 (제 1저자)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교신저자)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공동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제언 |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국민의 치안수요 증대로 경찰의 한계 영역 및 민사소송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25%가 넘는 높은 성장으로서, 과거에 부자들이나 소수 특권층에만 머물렀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혜택이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보다 다양한 민간경비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조성구, 2012: 1).

현재 민간경비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업체 수 약 4천개와 경비원 수 약 15만 명을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주요선진국에서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민간조사업 또한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²⁾에 포함되어 입법화에 힘을 얻고 있다.

1) 이처럼 심부름센터가 '탐정사무소'와 같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민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현행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탐정, 정보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조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우려는 정부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방이후부터 민간조사업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수행되었으며,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는 심부름센터 등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들어와 국내의 업체와 함께 시장을 형성하고 이 무렵부터 국회에서 다양한 도입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중 하나가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민간조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국내의 대형민간경비업체도 외국의 크롤(Kroll), 핑커튼(Pinkerton), 힐앤어소시에이츠(H&A)와 같은 다국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반면 국민의 사생활침해의 수준이나 정보유출의 빈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조성구 외, 2014: 23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민간조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

우리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을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가 있다.

최근까지 민간경비업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985년에는 민간경비업체의 수가 약 50여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그 수가 약 2,000개로 증가하였고, 최근 2014년 들어 업체수 약4,000개, 직원 수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강민완(2013)에

2)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의하면 민간경비업은 전문 직업으로서의 고객 안전을 담당하고 공경비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치안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Fisher(1998)에 따르면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고 외국에서 민간조사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조사 서비스는 민간경비 치안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였다(정일석 외, 2008: 273). 또한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구·김태민, 2012: 242-243).

2. 민간조사

1) 민간조사업의 시작

한편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1910-1945)인 1911년 현재의 민간조사법안과 유사한 「신용고지업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은 경제적 신용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접어들 무렵 활성화 되었지만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1961년 「홍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간주되었고, 홍신소라는 명칭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홍신소의 불법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미행, 도청, 청부살인 등으로 비용은 수억 원을 넘고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고 환불을 요구하면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조성구·김동제, 2013: 182).

국내의 민간조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홍신업단속법」을 피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수익성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미행, 도청, 살인 등을 일삼고 있으며 최근 간통 현장이나 불륜관계 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민간조사업의 현황

경찰청에서 2012년 말 국내의 심부름센터 현황을 조사 결과 국내에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다고 하였으며 100개의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 478개, 서

을 336개, 인천 125개, 충남 108개 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유형은 사생활조사(68%(27건), 개인정보제공 18%(7건), 위치추적(12%(5건), 불법채권추심 2%(1건)으로 개인 간의 조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는 2012년 8건(10명)을 검거하였으나 2012년 40건(332명)을 검거하여 검거건수로 5배, 검거인원은 33배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의뢰인은 주부가(196명(34%), 회사원(152명(27%), 자영업 78명(14%), 전문직(35명(6%) 순으로 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뢰인 성별 유형도 남성이 225명(40%), 여성이 342(6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0% 더 높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심부름센터뿐만 아니라 OECD회원국 가입이후 외국계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영래(2009)에 따르면 크롤(Kroll)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33개국 65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3,700-4,200여명의 직원을 운용하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원(2011)은 크롤(Kroll) 뿐만 아니라 핑커튼(Pinkerton), 힐앤어소시에이즈(H&A) 등 20여 개 정도라 하였다.

그러나 조성구(2012)에 의하면 현재 핑커튼(Pinkerton)은 2000년초 철수하였고 크롤(Kroll) 또한 2005-2009년까지 영업을 하다 현재는 철수한 상태이며, 현재 위에서 소개한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는 힐앤어소시에이즈(H&A)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계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서 철수한 이유는 수익성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 소비자의 고객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민상·오윤성(2013)은 민간조사제도는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중 특히 수사 및 조사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가 민간조사제도라고 하였다.

3. 선행연구의 정리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민간경비 연구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면 민간조사 연구는 허순봉의원(1999)의 발의이후 2000년 중후반부터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위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나 이 연구와 같이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다음 <표 1>에서는 이 연구주제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논 점
이상원(2008)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일석(2008)	민간경비시장의 영역 확장을 위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민간조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 경찰청 소속의 관리위원회를 설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관리, 특정분야 경력자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면제, 민간조사원 윤리규정을 제정, 민간조사업협회 설립과 가입을 법규상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정연민(2008)	민간경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도입으로 국가자격제도의 운영, 교육제도의 체계화, 관리감독체계의 명확화, 관련단체의 설립, 산·학·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영규(2010)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 「탐정업법」과의 비교를 하였는데 먼저 민간조사업의 정의를 명문화하여야 하며,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제기, 자격시험은 국회에 발의된 발의안을 준용,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기(2011)	민간경비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입전제조건을 충족, 경비업법을 개정, 구체적으로 업무를 규정, 자격시험제도, 전문지도자를 배출, 민간조사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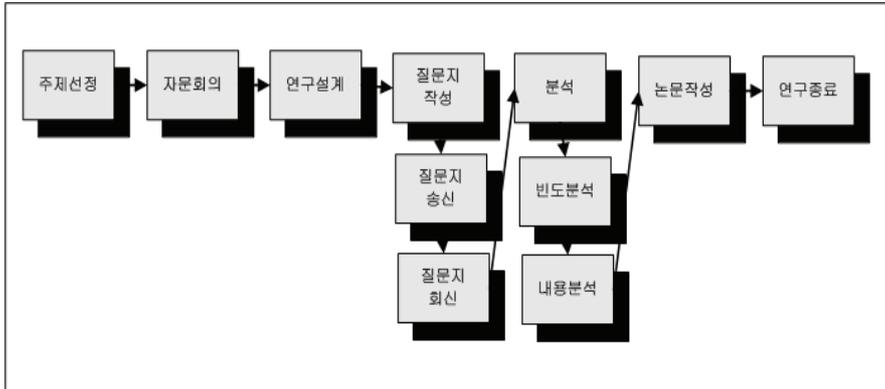
출처: 조성구 외(2014: 155).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

이 연구는 국내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탐색적(Exploratory)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보안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 으며, 연구질문 수행을 위한 연구절차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림 1〉 연구절차

2. 조사대상

국내의 민간보안업의 종사자는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와 같은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인 민간조사원은 아직까지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민간조사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문제에 표본으로 민간경비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 종사자가 생각하는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K보안업체의 지사에 해당하는 2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상무보 이상 직급인 지사장에 해당하는 자의 조력을 받아 무작위로 E-Mail을 배포하도록 하여, 470명으로부터 회신된 E-Mail을 표집 하였다³⁾. 다음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 이 연구에 대상인 K경비업체는 사원(계약직) 867명, 사원 734명, 대리 319명, 과장 383명, 차장 86명, 부장 37명, 상무보이상의 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성	425	90.4
	여성	45	9.5
연령	20-24세	48	10.2
	25-29세	155	32.9
	30-34세	131	27.8
	35-39세	74	15.7
	40-44세	28	5.9
	45-49세	20	4.2
	50세이상	14	2.9
경력	1-4년	95	20.2
	5-9년	213	45.3
	10-14년	130	27.6
	15-19년	17	3.6
	20년이상	15	3.1
학력	고졸	168	35.7
	전문학사	93	19.7
	학사	182	38.7
	석사	23	4.8
	박사	4	0.8
직위	사원	325	69.1
	대리	51	10.8
	과장	49	10.4
	차장	29	6.1
	부장	10	2.1
	상무보이상	6	1.2
근무지역	대도시	256	54.4
	중·소도시	120	25.5
	소도시	55	11.7
	농·어촌	39	8.2
전체		470	100.0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방법인 질적 연구는 연구 설계에 대한 합의된 구조는 없다. 그 만큼 질적 연구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조흥식 외, 2011: 67).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주된 연구법으로 알려진 인터넷조사 방법 중 E-Mail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김구(2008)에 의한 인터넷조사의 장점으로는 ①비용의 저렴성 ②소요기간의 단축 ③표본추출 용이 ④상호 의사소통의 원활함 ⑤전문가 및 특정집단의 조사 가능 ⑥ 설문응답의 빠른 회수 및 코딩 ⑦24시간 설문 가능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 <표 3>은 기존의 조사 방법과 E-Mail 조사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E-Mail 조사방법의 특징

	기존의 조사	E-Mail 조사
형태	오프라인	온라인
비용	고비용	저비용
기간	장기간	단기간
조사대상의 제약	존재	미존재
자료의 접근	어려움	용이함
조사의 연속성	불가능	가능
코딩	어려움	용이함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구조화(Structured)된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에서 나타난 자료를 빈도분석(Multiple Response Frequencies)하고, 선택 문항에 따라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을 제시된 내용을 비수량(Non-Quantity)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용된 연구도구로 폐쇄형질문에 응답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으며, 개방형질문에 대한 자료는 최근까지 개발된 프로그램 중 한글과 호환되는 QSR NVivo 8⁴⁾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4) 이러한 프로그램은 ATLAS.ti, Hyper Research, Maxqda, The Ethnograph, NUDIST, NVivo 등이다. 그러나 이중 한글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NUDIST(1981), NVivo(1995) 뿐이다. 이중 이 연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드수 10이하, 백분율 3% 미만의 자료는 극단치(Outlier)로 설정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V. 결과분석

다음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을 1차적으로 묻고, 그에 따른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2>는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의 일부이다.

.....

1.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구조적 차이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	④비슷하다	⑤매우비슷하다
--------	------	-----	-------	---------

2.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

민간경비와 민간조사가 차이가 ①있다면, 혹은 ②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있다면 ☞

②없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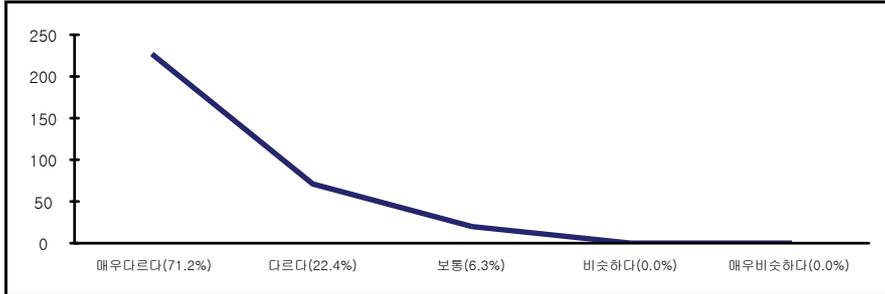
.....

<그림 2> 질문지

위와 같은 질문에 민간조사업과 민간경비업은 ‘매우 다르다’고 한 것이 (71.2%)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 ‘매우 비슷하다’라고 한 것이 0.0%로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 <그림 3>은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에 대한 결과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자료유형(미디어 텍스트, 그림, 표), 검색 및 자동코딩(줄간 검색 및 텍스트 결과 노드화), 도식방법(문서, 노드, 속성지원), 양적자료 활용(단어, 줄, 노드, 수계산, SPSS 호환)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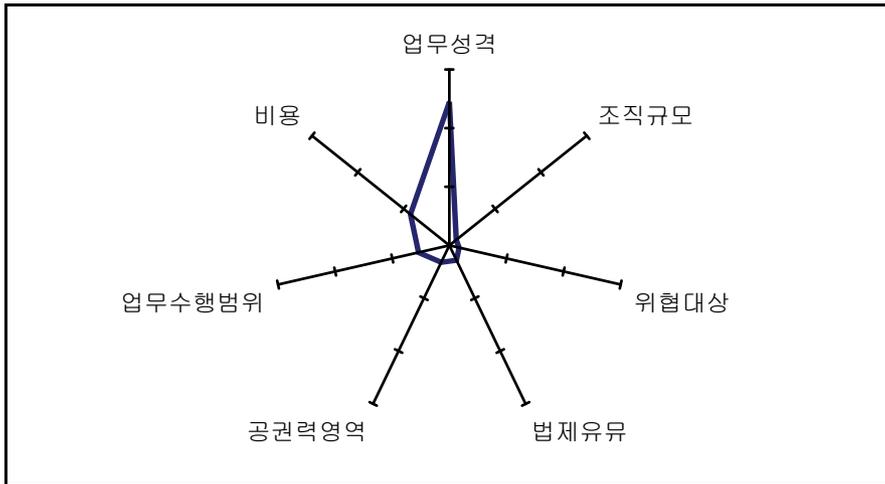


위의 <그림 3>에서와 같이 민간조사업과 민간경비업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이었다. 다음은 개방형질문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와 분석을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4> 노드(Node)빈도 결과

범주화		코딩수(N)	빈도(%)
상위범주	하위범주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차이	업무성격	245	51.4
	비용	85	17.8
	업무수행범위	54	11.3
	공권력영역	32	6.7
	법제유무	28	5.8
	위협대상	17	3.5
	조직규모	15	3.1
	합계	476	100%

비수량 분석결과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차이에 대하여 업무성격 254(51.4%), 비용 85(17.8%), 업무수행범위 54(11.3%), 공권력영역 32(6.7%), 법제유무 28(5.8%), 위협대상 17(3.5%), 조직규모 15(3.1%)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4>는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차이로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의 <그림 4>와 같이 민간조사와 민간경비는 ‘업무의 성격’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코딩된 하위노드를 제시한 것이다.

1. 「업무성격」

“민간조사는 조사 및 무언가를 밝혀내지만 경비는 단순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20131103_KSM_12)

“경비는 어떠한 침입이나 방화, 절도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장소를 지키는 수동적인 활동이지만, 민간조사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업무이다.”(20131105_PJU_24)

“경비업이 시설물,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단순한 업무라면 민간조사는 현재 경찰과 같은 사건발생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는 업무로 전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20131121_JEE_17)

“민간경비업은 보안적 성격인데 반하여 민간조사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적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20131102_SYH_5)

2. 「비용」

“민간경비업은 사전 예방적인 개념이라 비용이 인건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민간조사는 사후 처리적으로 미제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임으로 인건비가 저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20130920_LLM_9)

“민간조사업무와 경비업무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함.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20131101_ESA_6)

3. 「업무수행범위」

“민간경비는 고정된 지역에서 특정업무지만 수행하지만 민간조사는 이와 달리 이동적이어서 민간경비와 차이가 있다.”(20130915_JSH_14)

“민간경비는 자신이 부여받는 시설주내에서의 경계 임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민간조사는 어떠한 임무냐에 따라 접근방식이 천차만별이다.”(20131030_KWA_20).

4. 「공권력영역」

“민간조사는 민간경비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경찰의 고유 영역인 수사의 의미를 함축한 더 적극적인 뜻이다(20131112_PKM_8)

“민간경비업 개인과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인적, 물적 보호의 측면이 있다면 민간조사는 사법경찰과 유사하다.”(20130909_PBS_5)

5. 「법제유무」

“민간조사는 아직까지 특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이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의거한 합법으로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20131006_KMJ_7)

6. 「위협대상」

“민간조사는 특정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업무이고 민간경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업무이다.”(20131006_KMJ_3)

7. 「조직규모」

“민간조사는 주요업무가 경비업과 달라 업체의 규모나 직원의 수 등에서 경비업과 많이 다르다 통상 민간경비업체는 크면 클수록 업무에 유리하지만 민간조사업체는 꼭 그렇지 않다.”(20131121_NMH_18)

V. 논의 및 제언

1. 업무차이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국가가 담당하는 치안업무를 수익자의 부담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는 다양한 치안수요로 인해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업체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분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를 선택한 빈도가 71.2%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방형질문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의 분석 결과 민간경비와 민간조사의 차이는 다음 <표 5>과 같이 정리한 것이다.

<표 5> 차이점 구분

	민간경비	민간조사
의뢰인 목적	사전 예방적	사후 처리적
업무의 성격	제한적	비제한적
비용	저비용	고비용
업무수행범위	제한적	비제한적
공권력영역	제한	유사
법제유무	존재	미존재
위협대상	불특정다수	특정인
조직규모	대규모	소규모

2. 입법화 제언

지금까지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입법화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구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주무관청 설정 범주

주무관청	의원명
경찰청	1999년 한나라당 허순봉의원안
	2005년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안
	2008년 한나라당 이인기의의원안
	2013년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안
법무부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안
	2009년 무소속 성윤환의원안
	2009년 한나라당 이한성의의원안
	2009년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안

위의 <표 6>에서와 같은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으로 하는 법안 4건, 법무부로 하는 법안 5건 이었다.

최근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것이고, 반면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을 독자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와 같이 민간조사업이 현재의 민간경비업은 업무성격, 비용, 공권력영역, 법제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추가시키는 것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이와 같은 주제의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어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입법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표 7>은 지금까지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시도와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입법화 결과

입법화 시도	결과
「공인탐정업법」 하순봉(1999)	사창
「민간조사법안」 이상배(2005)	만료폐기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2006)	만료폐기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이인기(2008)	만료폐기
「민간조사업법안」 성윤환(2009)	철회
「민간조사업법안」 이한성(2009)	철회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2009)	만료폐기
「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윤재옥(2013)	계류중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2013)	계류중

현재 민간조사업은 이미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활동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제도가 경찰의 한계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조성구·이주락, 2011: 201).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내의 민간조사 시장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입법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강민원(2013). 민간경비업의 조직특성과 조직윤리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7-28.
- 김구(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엔엠북스
- 김동기(2011).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상철(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31-162.
- 안영규(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일본 탐정업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73-107.
- 이상원(2008).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35-253.
- 이상원(2011).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 주제발표문.
- 이영래(2009).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6(1): 31-52.
-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일석·박준석·오세광(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271-299.
- 정연민(2008). 민간경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업의 전망과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민상·오윤성(2013).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관한 연구-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525-559.
- 조성구(2012).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구·김동제(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41: 181-201.
- 조성구·김동제·손동운(2014). 딜레마의 민간조사제도: 민간경비 시장의 접근. 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조성구·김동제·손동운(2014). 대형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의 민간조사제도의 이해 수준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2).

- 조성구·김태민(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3: 241-267.
- 조성구·이주락(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81-205.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201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Fisher, Robert J. and Green, Gion. (1998),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

【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Son, Dong-Woon
Jo, Sung-Gu
Kim, Dong-Je

In advanced countr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made up of private security and in domestic, there is growing need constant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but it is not passed until now in assembly so a messenger office which is run illegally is growing because of demand by subdividing business areas.

That is a proof that both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don't meet demand of public peace to the public. that's why the police has own businesses like a investigation, traffic, intelligence, crime prevention and private security's business areas are limited like a facilities security, escort security, protection of a person, machine security, special security as the Private Security Act.

This study attempts to know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system and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cas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ecomes one of the private security. on some question, respondents reply like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is very different(71.2%), different(22.4%), average(6.3%), similar(0.0%), very similar(0.0%). the result seems like respondents recognize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as different businesses. In the result of non-quantity analysis, the differences seem like a business character, expense, business scope, public power, scale of organization, object of threat, legislation.

In domestic, effort to legislat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undergone difficulty since congressman Ha Soon Bong's motion in 1999 and today, congressman Yoon Jae 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congressman Song Young Geun's Private Investigation Act are pending in assembly.

This study's result is intended for examining difference in explo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n there is going to propose to the policy in cas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passed in assembly by amending Private Security Act like congressman Yoon Jea Ok's All Amendment Private Security Act.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Department of Justice, Private Security Act